

03

Special
Theme

화재사고 손해사정방법 및 발전방안





글 김성훈 카스코 화재해상 손해사정(주) 대표이사

1. 머리말

불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불이 재난이 될 때 이를 화재라고 한다.

화재사고는 인간이 불을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차츰 그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화재사고로 인해 한해 43,875건(2011년도 기준, 소방방재청 자료)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1,862명, 재산피해가 약 2,560억원에 달한다.

화재를 방지하고 화재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보험이다. 화재사고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누군가 부담을 지게 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능 중 하나가 손해보험상품이고 이 기능을 구체화시키는 제도가 손해사정업무이다.

본고에서는 화재사고에 따른 손해사정방법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화재사고 유형

화재사고는 발생시간, 장소와 발생당시 상황에 따라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발화장소와 화재사고 유형은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이나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가. 화재발생장소

화재발생장소는 통계자료에 나타난 2011년 한 해 동안 총 43,875건을 다발건수 순위별로 정리하면 [도표 1]과 같다.

03 Special The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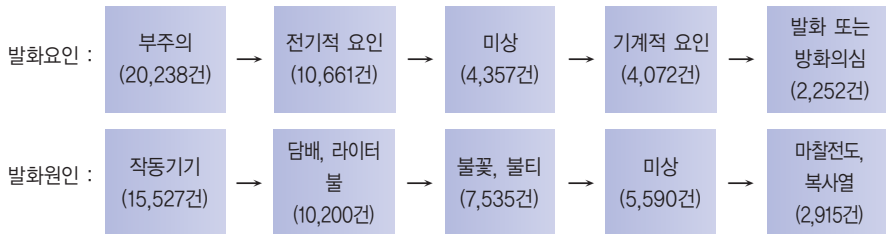


[도표 1] 화재발생 장소별 건수

[도표 1]과 같은 통계자료를 통해 볼 때,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비주거 건물, 즉 상가, 공장, 공연장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규모가 클 수 있는 장소에서 다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화재사고 원인

[도표 2]와 같이 2011년 한 해 동안의 화재발생 건수에 따른 발화요인과 발화열원을 기준으로 집계한 내용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화재사고가 부주의와 작동기기에 의해 다발하고 있다는 점은 안전에 대한 예방 및 관리가 소홀하다고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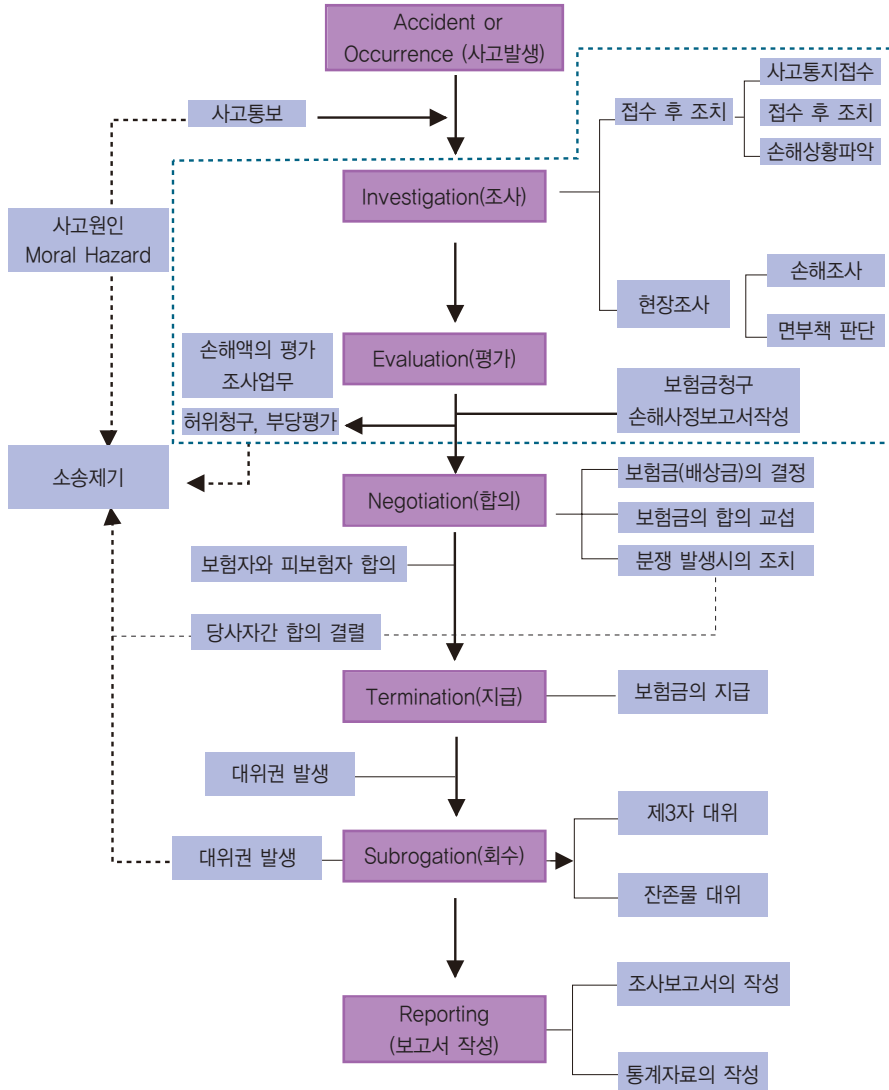
[도표 2] 화재사고 원인

3. 손해사정 절차

손해사정업무 범위는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 등의 업무)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화재사고가 보험에 담보되는 사고이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 손해가 있어야 한다. [도표 3]의 손해사정절차 흐름을 보면 손해사정업무에 대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도표 3] 손해사정 절차

[도표 3]의 손해사정 절차 중 조사(Investigation)와 평가(Evaluation)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고 손해사정 방법을 제시하려 한다.

4. 손해사정방법

가. 화재사고 원인조사

손해사정 업무 수행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인데, 원인조사는 소방서와 경찰서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에 의뢰하기도 하며, 손해보험사가 한국화재보험협회의 화재조사센터에 의뢰하는 정도의 범위에서 원인규명이 되고 있다.

손해사정 실무를 다루는 사람들은 경찰이 조사한 후에야 현장에 접근할 수밖에 없으며, 나름대로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제시하는 의견이 국가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화재사고 원인조사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나. 보험 목적의 조사와 평가

손해사정 대상을 재물로 한정시켜 보험사고에서 주로 다루지고 있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와 평가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표 참조)

〈표〉 보험 목적의 조사와 평가

보험의 목적	조 사	평 가	
		간 접 법	직 접 법
건 물, 구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자, 임대차 계약관계 ○ 건축, 총축시기와 규모 ○ 개·보수 시기와 규모 ○ 구조, 마감재 사용, 용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감정의 건축건축단가표에 따른 해당단가 적용 ○ 건축, 증축, 개·보수 가액에 물가변동율(한국은행자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측내역 기준, 적산자료를 인용한 공종별 물량과 공사 등에 일위대가, 물가자료상 또는 시장조사하여 얻어진 시중단가를 적용 ○ 전문 건설업체에 견적 의뢰
기 계, 전기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자, 임대차 계약관계 ○ 관리, 감독자, 정비자 ○ 운전자(Operator) ○ 품명, 규격 및 사양 ○ 제작자와 제작시기 ○ 취득시기, 개·보수시기와 규모 및 금액 ○ 피해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감정의 동산시가조사표 ○ 취득가액에 물가변동율 적용 ○ 개·보수시기와 범위를 기준한 가액에 물가변동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제작업체에 견적 의뢰 ○ 적산자료를 인용한 물량과 공사 등에 일위대가 물가 자료상 또는 시장조사하여 얻어진 시중단가를 적용 ○ 동종 제작업체에 견적의뢰
집기비품, 가재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자, 임대차 계약관계 ○ 품명, 규격 및 사양 ○ 제작업체 및 시기 ○ 사용용도 ○ 취득시기 및 금액 ○ 피해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감정의 동산시가조사표 ○ 취득가액에 물가변동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제작업체에 견적 의뢰 ○ 물가자료, 시장조사에 의한 시중 단가 ○ 동종 업체에 견적 의뢰
동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자, 임가공 관계 ○ 품명, 규격 및 사양 ○ 제조업체, 공급업체, 납품업체 ○ 구입시기와 조건에 따른 구입단가 ○ 제조 또는 유통 과정 ○ 제조원가 ○ 판매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가에 물가변동율 적용 ○ 임가공 계약 조건 적용 ○ 판매가에 표준소득을 적용 (국세청표준소득율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자료와 시장조사하여 얻어진 시중단가 ○ 업종별 제조원가 기준서를 활용 ○ 동종 업체 또는 전문가에 견적 의뢰

※ 평가기준 : 손해액의 산정기준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상법 제676조)
 ※ 주의해야 할 사항 : 위 보험의 목적을 조사와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5. 발전 방안

원인조사 결과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조사에 동원되는 인력, 시간 및 비용 등 단기적 문제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폭 넓게 검토되어야 하리라 생각하며 그 동안의 실무상 느꼈던 점을 간추려 아래와 같은 안을 제시하려 한다.

- 화재원인조사를 연구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 한국화재보험협회 화재조사센터에 의뢰할 수 있는 자격 확대
-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연구소, 해당업종 및 화재발생과 관련 해당분야의 전문가,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된 화재조사 기구 설립
- 국가기관의 현장조사 시 지명된 손해사정 실무자 입회 가능토록 하는 실무지침 마련
- 손해사정사가 화재원인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 때 적극 검토하여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
- 손해사정 실무에 종사하는 각종 자격자를 전문가로 인정 제도
(기술자격 취득자, 회계사 등에 대한 손해사정 자격 인증제도 마련)
- 해당 분야 실무 경력에 따른 자격시험응시 기회 확대와 전문가로 인정 하는 제도
- 기술사 자격응시 자격에 손해사정 실무경력 인정 제도
- 1종 손해사정사와 피해 물건 해당 기술자격자가 상근하는 손해사정법인에 법원감정인으로 채택하는 제도
- 국책연구소에 기술자문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경찰이나 사법기관의 기록 중 손해사정 평가에 해당되는 내용만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

아울러 손해사정 시 보험가액과 손해액 산정은 보험금과 관련이 있으므로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